

의안  
번호

438

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5. 03. 19.

전문위원 김 동 성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양순임의원 외 15명

나. 의안번호 : 제438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2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3. 13.

### 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한복입기 권장(안 제5조)
- 마. 한복의 날 지정(안 제6조)
- 바. 활성화 및 지원(안 제8조)
- 사. 한복착용자의 우대(안 제9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5. 03. 06. ~ 2025. 03. 12.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### □ 주요 내용

- 안 제1조(목적)와 제2조(정의)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“한복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·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·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,
- 안 제5조(한복입기 권장)는 구청장이 관내 기관이나 단체, 민간기업 등에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6조(한복의 날 지정)와 제7조(고유의 명절 및 주요행사)는 구청장이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날,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 행사에 한복 입기 활성화 사항을 규정하여 한복 입기 문화를 구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8조(활성화 및 지원)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9조(한복입는 자의 우대)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성북구가 설치·운영·관리 하는 공연·전시 또는 문화·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,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10조(표창)는 한복 입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
## 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입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상생활 가운데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- 다만 한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문화로 계승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